

보도참고자료 별첨
(2021. 1. 11.)

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

2021. 1.

목 차

I 지원대상 관련

1.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	1
2. 소상공인 기준은	2
3.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지	2
4. 타 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한지	2
5. 새희망자금 수혜자 버팀목자금 지급	3
6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인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함	3
7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	3
8.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	4
9. 외국인·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가능한지	4
10. 여러 사업체 동시 운영하는 경우	4
11.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지원 대상 증가	4

II 자금신청 관련

12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	5
13. 온라인 취약계층의 경우	5
14.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	5
15.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	6
16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	6

17. 신청 시 준비서류 및 문의는 어디에	7
18. 사업자번호 입력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	7
19.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지	7
20.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	8

Ⅲ 지원금액 관련

21. 편의점의 경우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필요	8
22. 편의점의 경우 점포별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	8
23. 집합금지업종인데 100만원만 지급되는데	9

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

24.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	9
25. '19년 매출은 없고 '20년 매출만 있는 경우	9
26. '20년 11월 이후 개업한 경우	9

I

지원대상 관련

1.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?

-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,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
<버팀목자금 지원 요건>

구분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집합금지업종	○	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)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	무관	300만원
영업제한업종	○		무관	200만원
일반업종	○	'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	○	100만원

* '20.11.30.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(휴·폐업 제외)

**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

<참고>

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

구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	연말연시특별방역
집합금지	유흥업소 5종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편	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홀덤편	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·빙상장·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 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권] 밀폐형야외스키린골프장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, 교습소	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 등	숙박시설

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(음식점의 경우 10억원)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다만,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20.11.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② 일반업종 : '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(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'19년 대비 '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)

※ ('20년 개업) '20. 9~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?

- (연매출액)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,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 - * (자동차 제조업) 120억원 이하, (광업·운수업) 80억원 이하, (숙박·음식점업) 10억원 이하
- '19년 또는 '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, '20년에 개업한 경우 '20년 9~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(상시근로자) '20년 기준 일부 업종(제조업·광업·운수업·건설업)은 10인 미만, 음식·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3.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?

- 사행성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.
 - 다만, 용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·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.
-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.

4. 중앙정부·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
- (중앙정부)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*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.
 -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
 -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.
- (지자체)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5.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?

-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.
 - 다만, '20년 매출액이 '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*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.
- * '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(21.2.25일)을 토대로 '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(21.3월중)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
-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이번에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6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

-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인한 것입니다.
-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·숙박시설,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7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*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·학습지교사·방문교사 등
- 다만,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.

8.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- 개인택시 사업자가 '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, '19년에 비해 '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인택시 운전자는 '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'(고용노동부)의 지원 대상입니다.

9. 외국인·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,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.

10.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,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?

-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 -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.
-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,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11.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·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?

-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, ② '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.
 - ① 이·미용시설 추가, 음식점·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
 - ② '20. 6 ~ 11월 개업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

II

자금신청 관련

12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?

-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 -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(공인)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.
 -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,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

13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?

-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,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(고령자, 시각장애인, 중증환자 등)은 가족, 직원,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*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.

* 새희망자금 신청시, 전통시장 상인들이 '시장 상인매니저' 도움 받은 사례 다수

14.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.
 -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15.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 문의는요?

- 1차 신속지급(1.11~) → 1차 확인지급(2월) → 2차 신속·확인지급(3월) 순서로 진행됩니다.

	지원 대상	지원 시기	공고 시기
1차 신속지급	11.24 이후 집합금지·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	1.11~	1.6.
1차 확인지급	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미성년자 등	2월 중	(향후 공고)
2차 신속·확인지급	'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*	3월 중	(향후 공고)

*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1차 지급 미수급자중 '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(일반업종)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'19년 연간매출 대비 '20년 연간매출 감소

-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버팀목자금.kr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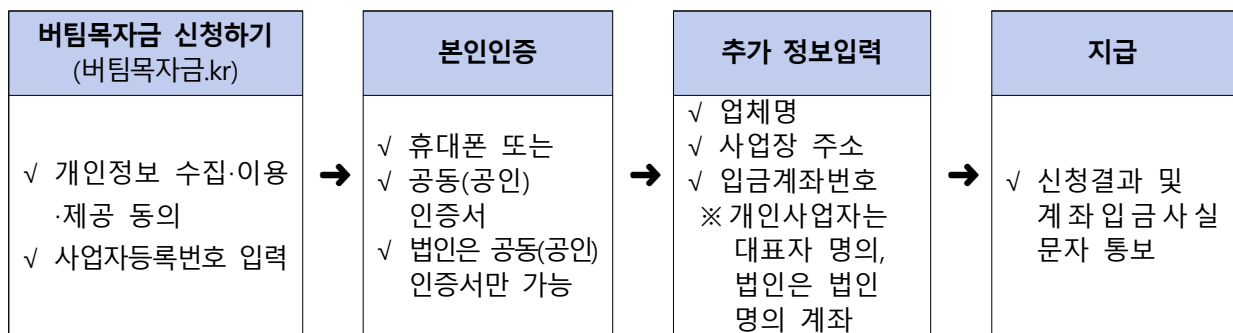
○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* (온라인)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- [09시-20시 채팅상담] 이용
(전화 문의) ☎ 1522-3500 (버팀목자금 콜센터, 09~18시 운영)

16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-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온라인신청 절차 >



- 1차 확인지급, 2차 신속·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17.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-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버팀목자금.kr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>

구 분		준비서류	비고
일반 업종	공동대표, 가족대리수령(미성년대표 등)	대리인 위임장	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
	계좌압류 사업장 등	가족관계증명서류	
	비영리단체	사회적기업, 소비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	
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	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확인서	

18.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.

-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,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
 - 1)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
 - 2)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

19.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?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.
- 다만, 미성년대표자,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(2월)이 가능합니다.

20.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,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.(1차 신속지급)
-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·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'20년 부가세 신고(2월25일)에 따라 '19년 대비 '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 -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III

지원금액 관련

21.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?

-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.
-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22.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,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?

-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
-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,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.

*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·교육·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

23.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
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.
-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.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(100, 200만원)을 지급합니다.

IV

매출감소 판단 관련 (일반업종만 해당)

24.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('19년 이전 개업) '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연간매출액이 '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.
- ('20년 개업) '20년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.

구 분		기준 매출액	비교 매출액
'19년 이전 개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'20년 연간 매출액 * '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	'19년 연간 매출액
'20년 개업자		'20년 12월 매출액	'20년 9~11월 월평균 매출액

25. '19년은 매출이 없고 '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?

- '20년 매출이 '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,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26. '20.11월에 개업했지만,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